

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자유·진리·정의의 교시 아래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설치한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본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국제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제3조(교육목적)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심오하게 연찬하여 전문 연구 인력으로서의 독창적 능력을 계발하고, 지도자적 품격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제전문대학원 : 국제통상 및 국제지역과의 교류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연구하고 교수하여 국제화를 통한 국제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3. 법학전문대학원 : 폭 넓은 교양 및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며,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추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4. 경영대학원 : 경영학이론과 실재를 교수·연구함과 아울러 최고경영자로서의 지도적 인격 완성과 창의력 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교육대학원 : 교육과 전공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연구·교수하고, 교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산업정보대학원 : 산업정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양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체계적 지식을 연구하고 교수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8. 법무대학원 :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법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9. 문화예술대학원 :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예술 산업에 있어서 다양하고 실천적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과 예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및 경영기법 개발을 연구하고 교수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의2(법학전문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학위과정, 수업연한 등 학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학위과정) ① 각 대학원은 그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둔다.

1. 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2. 국제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4. 협동과정 및 학·석사 연계과정

가. 학·연·산 협동과정 : 일반학위과정의 각 학위과정으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설치된 과정을 말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나. 학과간 협동과정 : 일반학위과정 중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다. 학·석사연계과정 :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를 5년(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는 6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각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특별과정을 둘 수 있으며, 공개강좌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편성과 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위과정의 편성과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설치 및 폐지) ① 학과(전공)의 설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모집인원이 저조한 학과(전공)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폐지할 수 있다.

제6조(수업) ①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수업을 제외하고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제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제7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전형방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입학지원 자격)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상이한 지원자는 대학원 해당 학과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원하여야 한다.

3. 통합과정 : 통합과정 입학지원 자격은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으

로 정한다.

4. 학·석사 연계과정 : 학·석사 연계과정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지원 자격은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입학지원서 및 소정의 서류와 함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부정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합격 후 소정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는 당해 학년도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② 재입학이 결정된 자는 재입학금과 함께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편입학) ①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전과 및 전공 변경)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전과 및 전공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위탁학생) 각 대학원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의 입학)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특례입학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과, 학점 및 수료

제16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2년(통합과정은 4년)이상, 학·석사 연계과정의 석사학위과정은 1년 6월 이상으로 한다.

2. 특수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 2년 6월 이상으로 한다.

② 학위수여 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사람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1학기, 통합과정은 2학기 이내를 단축하여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학연한)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4년(8학기), 박사학위과정 4년(8학기), 통합과정 6년(1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2. 특수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 5년(1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교과과정의 운영) ① 각 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은 「대학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② 각 대학원은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협정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은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각 대학원 교과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각 대학원은 1년 2학기제로 운영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3학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각 대학원은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점 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 교과별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정규학기에 개설한 교과목을 보충할 목적인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정규학기 이외의 기간에도 기존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2(학점당 이수시간) 학점당 필요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20조(과정별 최소 이수학점) 각 과정의 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교과학점과 논문연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1. 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가. 교과학점은 석사학위과정 24학점, 박사학위과정 36학점, 통합과정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나. 논문연구는 석사학위과정 2학점(최종학기 2학점), 박사학위과정 4학점(최종 두 학기 각 2학점), 통합과정 6학점(최종 세 학기 각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 학·석사연계과정의 석사학위과정 입학 전에 이수한 학사 및 석사학위과정 연계과목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연계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인정한다.

라. 박사학위과정 입학 전의 석사학위과정 초과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해당 책임교수의 제청을 받아 박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대학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마.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생은 교내 학사학위과정 교과목을 6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교과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특수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가.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학점을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고, 논문연구는 2학점(최종학기 2학점)[교육대학원은 4학점(최종학기 4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무논문학위과정자”라 한다)에 대한 교과학점 및 연구보고 학점(최종학기)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수강신청학점 한도) ① 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의 수강신청학점은 매 학기 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 통합과정 9학점 이내로 한다.

② 특수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의 수강신청학점은 매 학기 6학점 이내로 한다.

③ 교육대학원의 경우, 제2항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과목은 학기당 4학점(학교현장실습교과목 신청학기에는 6학점), 보충과목은 학기당 6학점(총 28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교직과목은 교육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교육대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부에서 개설한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학점(교육대학원의 경우 재학연한 동안 1회에 한함)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기졸업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학원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보충과목 이수) ① 하위 과정과 학과(전공)가 다른 사람은 책임교수가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보충과목은 그 하위 과정의 교과목 중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3학점, 박사학위과정 6학점 이상으로 한다.
2. 국제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3학점, 박사학위과정 6학점 이상으로 한다.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6학점(경영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은 3학점) 이상으로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하위과정과 학과(전공)가 다르거나 유사한 사람에 대한 보충과목 이수 및 인정학점의 한도 등에 관한 결정은 학과(전공)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충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보충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산정하되,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3조(합동수업)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원 학과(전공)간 및 대학원간의 합동수업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합동수업은 전 과정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학점인정) ① 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타 대학교 대학원과 학점교환을 협약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수한 경우 해당 학위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석사연계과정의 석사학위과정 입학 전 이수한 학사 및 석사학위과정 연계과목은 6학점 이내에서 석사학위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과정 입학 전 석사학위과정 최저수료학점 초과분은 6학점 이내에서 박사학위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생은 교내 학사학위과정 교과목을 6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석사학위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재입학생의 기 취득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전과생의 경우 유사 교과목이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할 수 있다.

⑥ 편입학생은 최저수료학점 2분의 1 이내에서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해당 학위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수료요건 및 시기) ① 학위과정별 최소 이수학기를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교과 및 연구) 및 취득학점(보충과목 제외) 평균 성적 80점 이상을 학위과정의 수료요건으로 한다. 단, 보충과목 이수대상자는 해당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각 과정의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일로 하며,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① 각 학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논문(연구보고서) 제출 학기에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을 모두 이수 예정인 자(특수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의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의 경우에 한함)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영대학원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학위청구논문 또는 학과에서 인정하는

석사논문에 상응하는 논문 대체실적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학위청구논문, 논문 대체실적 및 논문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외국어시험은 60점 이상,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조기졸업 신청자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은 학과(전공) 교수회의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받은 경우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은 재학 둘째 학기까지, 석·박사통합과정은 재학 다섯째 학기까지, 특수대학원은 재학 셋째 학기까지의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93점 이상인 자
2.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의 연구 실적이 공인된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되거나 확정되는 등 연구실적의 탁월성이 인정되는 자

② 조기졸업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격을 상실한다.

1. 제57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93점 미만인 사람
3. 조기졸업을 포기한 사람

제 4 장 성적 및 출결

제28조(성적평가) ① 교과학점이 부여되는 교과목의 성적은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절대평가하고, 이에 해당되는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점수	95이상 100	90이상 95미만	85이상 90미만	80이상 85미만	75이상 80미만	70이상 75미만	70미만
등급	A ⁺	A	B ⁺	B	C ⁺	C	F
평점	4.5	4.0	3.5	3.0	2.5	2.0	0

② 교과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과목의 성적은 P(통과) 또는 NP(불통과)로 부여한다.

③ 논문연구의 성적은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부여한다.

④ 교과학점 및 논문연구 성적 평가 시 I(평가보류)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삭제 2009. 3. 1)

제28조2(출결) ① 수업실시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직계가족 사망, 학생의 입원 또는 전염성 질병 감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담당 교원의 승인 하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9조(이수인정) 수업실시 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하고 교과목의 성적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교과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 5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및 퇴학

제30조(등록 및 연구등록) ①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 납부 등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과 국제전문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4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은 5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대상자는 대학원과 국제전문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3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학·석사 연계과정의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④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기일 내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1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한 휴학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4학기, 통합과정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병역으로 인한 휴학 기간
2. 출산전후 휴학 기간 : 1개 학기
3. 육아휴학 기간 : 2개 학기

④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휴학연기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 학·석사 연계과정자는 석사과정 입학 후 첫째 학기는 군입대 및 질병을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제32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2.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3.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람
4.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이 결정된 사람

제34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6 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

제35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개강좌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으며, 연구생을 받을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좌에 소요되는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연구과정) ① 연구과정은 일반연구과정과 수료후연구과정으로 구분한다.

1. 일반연구과정의 연구생은 해당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책임교수의 추천과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
2. 수료후연구과정의 연구생은 해당 학위과정 수료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희망하

는 자

② 일반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과정수료를 인정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7조(특별과정) 각 대학원에 전문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특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수강허가) 연구생의 수강허가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7 장 학위수여

제39조(학위수여) ①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 모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0조에 규정된 해당 학위과정 이수학점 취득한 사람
2. 제22조에 규정된 해당 보충과목학점 취득한 사람(해당자에 한함)
3. 취득학점의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인 사람
4.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영대학원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논문의 본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에 합격하거나 학과에서 인정하는 석사논문에 상응하는 논문 대체실적을 제출한 사람

나. 연구보고서 또는 전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심사에 통과한 사람(특수대학원 및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에 한함)

다. 별도의 방법으로 논문대체를 인정받은 사람(특수대학원에 한함)

② 석·박사 통합과정을 퇴학한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학위논문 포함)에는 총장 승인을 받아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0조(학위종별)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학위과정별 학위명은 [별표 1]과 같다.

제41조(학위심의) 각 대학원장은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한다.

제42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위수여대상자에게 제40조의 학위종별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3조(학위수여 횟수 및 시기)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하되, 시기는 2월 및 8월 말로 한다. 단, 수여식은 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학위수여 취소) ①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논문의 표절, 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 교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입학허가가 취소된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한다.

제45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 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

1. 대학원장은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 심의하고 수여할 학위종별은 제40조에 따르되, 이를 받을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한다.

2.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3.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수여를 확정한다.

제46조(학위기 양식)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의 학위기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47조(학위복장규정) 석사, 박사학위복의 학위종별 후드 색상은 [별표 2]와 같다.

제48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 논문은 학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발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8 장 대학원위원회

제4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 추천의 11명 이상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위원의 임기) 대학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1조(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다만 입학(입학취소 제외)의 경우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과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만 수업계획의 경우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4. 공개강좌와 특별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청구를 위한 자격시험 및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다만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6. 이 학칙 및 각 대학원의 제규정 등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2조(소집 및 의결방법) 대학원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제53조(학부과정과 각 대학원 과정의 연계 운영) ① 각 대학원장은 해당 대학원 과정의 학사운영을 관련 각 학부(과)장에게 위임하여 학부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과)별로 대학원학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9 장 장학, 학생활동 및 상벌

제54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학생회) ①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 각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학생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56조(포상) 각 대학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또는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57조(징계) ①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1주일 이내)
2. 근신(근로봉사)
3. 유기정학(4주일 이내)
4. 무기정학
5. 제적

② 정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징계 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징계를 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이 결정되면 소속 대학원장은 관련부서, 학부모 및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장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설치·운영

제57조의2(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의한 학과 및 과정의 설치·운영규정」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 11 장 대학원 학칙 개정

제58조(학칙개정 절차) ① 대학원의 학칙 개정은 대학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안된 학칙개정안을 1주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학칙개정안은 대학원위원회,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

한다.

제 12 장 보 칙

제59조(대학원 각 규정)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학원 규정을 따로 둔다.

제60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동아대학교 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예술대학원 학칙」, 「동아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동아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동아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전문·특수대학원의 학칙 통합에 따른 적용례)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소속 대학원 학칙 등 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모집단위 신설, 정원조정 및 학과명칭변경 시기) 다음의 모집단위 신설, 정원조정 및 학과명칭변경은 200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1. 대학원의 학과간협동과정에 예술학과(석사·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한다.
2.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418명을 405명으로 정원조정하고 박사학위과정 150명을 157명으로, 학과간협동과정의 예술학과 석사학위과정 3명, 박사학위과정 3명으로 각각 정원조정한다.
3. 대학원의 도시조경학과는 도시계획·조경학과로, 산업대학원의 도시조경학과는 도시계획·조경학과로, 정보통신대학원의 정보공학과는 컴퓨터공학과로, 예술대학원의 미술학과는 아동미술학과, 디자인학과는 조형예술학과, 음악학과는 컴퓨터실용음악학과로 각각 명칭 변경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편성과 정원)는 2005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특수대학원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대학원과 정보통신대학원의 통합에 따라 산업대학원(산업시스템공학과, 토목공학과, 해양공학과, 기계공학과, 환경관리학과, 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금속공학과, 도시계획·조경학과, 신발산업공학과, 향만물류시스템학과)과 정보통신대학원(제어정보학과, 전자정보통신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상거래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6학년도까지는 해당 대학원 및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7학년도부터는 통합된 산업정보

대학원으로 졸업하되, 산업시스템공학과는 산업경영공학과로, 제어정보학과는 전기공학과로 졸업한다.

③(특수대학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정책과학대학원의 명칭 변경에 따라 정책과학대학원(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6학년도까지는 정책과학대학원 및 전공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7학년도부터는 명칭 변경된 사회복지대학원으로 졸업하되, 행정학전공은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전공을 존치하고 사회복지학전공은 사회복지학과로 졸업한다.

④(전공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경찰법무대학원의 경찰법학과(경찰법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6학년도까지는 경찰법학과(경찰법학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7학년도부터는 경찰법학전공으로 졸업한다.

⑤(학위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제40조에 의한 정책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학위명은 “행정학석사”를 “사회복지학석사”로 변경하되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경찰법무대학원 경찰법학전공의 학위명은 2006학년도까지는 “경찰법학석사”로 하되 2007학년도부터는 “법학석사”로 한다.

⑥(무논문학위과정자에 대한 경과조치) 동북아국제대학원의 2004학년도 입학자는 이 변경학칙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응용미술학과, 농학과, 생명자원과학과, 농생물학과의 재적생 학사업무는 입학 당시 학칙을 적용하며, 응용경제학과 재적생은 금융학과 재적생으로, 산업시스템공학과 재적생은 산업경영공학과 재적생으로, 자원공학과 재적생은 에너지·자원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동북아국제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중국지역전공, 일본지역전공, 동북아통상전공 재적생은 동북아지역및통상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④(교육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심리전공, 교육상담전공, 교육방법전공의 재적생 학사업무는 종전 학칙에 의한다.

⑤(산업정보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신발산업공학과 및 전자상거래학과의 재적생 학사업무는 2008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칙에 의하며, 2009학년도 이후부터는 학생이 원하는 학과로 졸업한다.

- ⑥ (언론홍보대학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언론홍보대학원은 2008년 2월 29자로 폐원하며, 소속학과 재적생의 학사업무는 종전 학칙에 의한다.
- ⑦(예술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조형예술학과 재적생의 학사업무는 입학 당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박사학위과정 체육학과의 체육학박사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학과간협동과정 의생명과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일반대학원 석사·박사학위과정 의생명과학과 재적 학생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2010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재적생은 아동가족학과로, 학·연·산 협동과정 법학과 재적생은 국제법무학과로, 동북아국제대학원 재적생은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재적생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육대학원 및 산업정보대학원 폐과(전공)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대학원 철학교육전공, 독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식물자원·조경교육전공, 상업정보교육전공, 관광교육전공, 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정보·컴퓨터교육전공 및 산업정보대학원 전기공학과, 전자정보통신학과,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은 종전 학칙에 따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생물학과 재적생은 생명과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 ③(경영대학원 전공 폐지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대학원 증권/

금융전공, 선물거래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④ (산업정보대학원 정원조정 및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산업정보대학원 뉴에코시티학과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르고, 기술·경영컨설팅학과의 학위명 변경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1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재적생은 국제전문대학원 재적생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4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영유아보육학과 재적생은 영유아학과 재적생으로 한다.

② 학과가 폐과되는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유전공학과, 식물생명공학과, 응용생물공학과, 항만·물류시스템학과, 예술학과, 나노공학과와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③ 학과 또는 전공의 명칭이 변경되는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의생명과학과, 국제법무학과 국제관계·국제금융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④ 학과가 신설되는 대학원 입자가속기및의학물리학과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제3조(예술대학원 명칭 변경 및 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예술대학원 재적생은 문화예술대학원 재적생으로 한다. 다만, 학과가 폐과되는 예술대학원 컴퓨터실용음악학과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4조(국제전문대학원 학과·전공·학위명 변경 및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전공·학위명이 변경되는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다문화전공) 재적생은 국제중재학과(글로벌한국학전공, 글로벌다문화전공) 재적생으로 하며, 전공이 폐지되는 국제학과 글로벌커뮤니

케이션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5조(사회복지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는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재적생은 입학 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되, 2014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보건복지상담학과(사회복지학전공)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5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 ① 학과가 폐지되는 대학원 윤리문화학과, 식품과학과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 ② 학과 전공이 폐지되는 대학원 사학과 동양사전공, 서양사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 ③ 학과 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사회복지전공 재적생은 평생교육및교육사회 재적생으로 하고, 국제법무학과 국제관계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3조(경영대학원 학과 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운영관리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4조(교육대학원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전공이 폐지되는 교육대학원 유아영어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5조(산업정보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가 폐지되는 산업정보대학원 도시계획·조경학과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전문대학원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전공이 폐지되는 FTA국제통상전공, 국제통상분쟁조정전공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3조(일반대학원 세부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전공을 교육공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단, 변경 전 교육방법전공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6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 ① 학과가 폐지되는 대학원 철학과, 일본학과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 ② 학과의 전공이 폐지되는 대학원 간호학과 응급전문간호학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 ③ 학과의 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독서논술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3조(사회복지대학원 학과 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사회복지대학원 보건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4조(문화예술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학과가 폐지되는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국제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폐지하고 본 학칙 시행을 위해 대학원 각 규정에 흡수 통합하여 시행한다.

③ (예술대학원 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부칙(2014.3.1.시행)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과가 폐과된 예술대학원 컴퓨터실용음악학과의 재적생(수료생 포함)은 문화예술대학원 실용음악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가 폐지되는 대학원 학·연·산협동과정 의학과와 학과간협동과정 나노공학과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3조(국제전문대학원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는 국제전문대학원 국제중재학과(글로벌통상금융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글로벌다문화전공) 재적생은 국제학과(글로벌통상금융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글로벌다문화전공) 재적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교육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전공의 명칭이 변경되는 교육대학원 디자인·공예교육전공과 기계·금속교육전공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대학원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7학년도까지 입학한 재적생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로 졸업하고, 복학 등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의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제3조(2018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가 폐지되는 대학원 학·연·산협동과정 입자가속기및의학물리학과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제4조(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논문 제출 자율화에 대한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논문 제출 자율화(논문 또는 논문대체실적 중 선택)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대학원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전공이 폐지되는 교육대학원 일본어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무용교육전공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따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 및 전공 편성표와 입학정원 및 학위명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63개 학과 464명, 박사학위과정 : 60개 학과 178명, 계약학과 석사학위과정 : 1개학과 20명(정원외)]

가. 석사, 박사학위과정

계 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학위명	학 과	전 공(석사 포함)	학위명
인문 사회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문학박사
	문예창작학과	문학석사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 문예이론, 독서, 아동문학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영어영문학과	영어학, 영문학, 영어교육, 영번역(석사)	문학박사
	사학과	문학석사	사학과	한국사, 기록관리학	문학박사
	고고미술사학과	문학석사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 미술사학, 박물관관리학	문학박사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과	평생교육 및 교육사회,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공학 , 교육행정, 교육상담	교육학박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	중국어번역, 중국문학	-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과	공법, 사법, 형사법, 기초법·경제법·사회법	법학박사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정치학과	정치이론, 정치사 및 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치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과	조직관리, 재무행정, 지방행정 및 도시정책	행정학박사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과	경제학	경제학박사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사회학과	사회심리·사회제도 및 사회문제, 산업사회·사회계층 및 사회변동	사회학박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사회복지학(석사)	-
	신문방송학과	언론학석사	신문방송학과	언론학	언론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인사·조직, 운영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경영학박사
	무역학과	경제학석사	무역학과	무역학	경제학박사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회계학과	회계학	경영학박사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석사	관광경영학과	관광산업경영, 관광이론 및 개발	관광경영학박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	경영학박사
	금융학과	경제학석사	-	금융학(석사)	-
자연 과학	수학과	이학석사	수학과	해석학, 대수학, 기하학 및 위상수학, 통계학 및 응용수학	이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물리학과	핵 및 플라즈마물리, 응집물질물리	이학박사
	화학과	이학석사	화학과	물리화학, 유기 및 생화학, 무기 및 분석화학	이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이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 임상영양학(석사)	이학박사
	아동가족학과	아동가족학석사	-	아동가족(석사)	-
	의상섬유학과	이학석사	의상섬유학과	패션뷰티디자인, 섬유산업학	이학박사
	생명공학과	이학석사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이학박사
	응용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응용생명과학과	식물생명공학, 응용생물공학, 생명화학, 식품생명공학	이학박사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과	임상간호학, 지역사회간호 및 간호관리학, 중환자전문간호학(석사)	간호학박사
	건강과학과	이학석사	건강과학과	의약생명공학, 건강관리학, 식품영양학, 생명과학	이학박사
	의과학과	이학석사	의과학과	의과학	이학박사

계 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학위명	학 과	전 공(석사 포함)	학위명
공학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건축공학과	건축공학	공학박사
	건축학과	공학석사	건축학과	건축학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토목공학과	구조 및 토질공학, 상하수도 및 수공학, 측량 및 건설관리학, 토목공학(국제화프로그램)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기계공학과	재료 및 설계공학, 열 및 유체공학, 생산 및 제어공학, 스마트공장HW솔루션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공학석사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공업화학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전기공학과	전기기기 및 전력전자, 제어 및 전력시스템, 센서 및 재료공학	공학박사
	산업경영공학과	공학석사	산업경영공학과	생산 및 품질시스템, OR 및 물류시스템, 인간공학 및 안전시스템, 스마트공장운영설계(석사), 스마트공장융합(석사)	공학박사
	환경공학과	공학석사	환경공학과	환경 및 에너지공학	공학박사
	금속공학과	공학석사	금속공학과	금속공학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공학박사
	도시계획·조경학과	공학석사	도시계획·조경학과	도시공학, 조경학	공학박사
	에너지·자원공학과	공학석사	에너지·자원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	공학박사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공학석사	-	조선해양플랜트	-	
예·체능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체육응용과학, 체육철학사회	체육학박사
	태권도학과	체육학석사	태권도학과	태권도학, 국제태권도학, 운동처방재활	체육학박사
	미술학과	미술학석사	미술학과	한국화, 서양화, 판화, 조각, 공예	미술학박사
	음악학과	음악학석사	-	성악(석사), 기악(석사), 작곡(석사)	
	조형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조형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 섬유디자인	디자인학박사
의학	의학과	의학석사	의학과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예방의학, 기생충학, 의공학, 내과학, 일반외과학, 정형외과학, 신경외과학, 흉부외과학, 성형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정신건강의학, 신경과학, 비뇨기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진단검사의학, 미취과학, 영상의학, 치료방사선과학, 피부과학, 가정의학, 재활의학, 핵의학, 직업환경의학, 치의학	의학박사

나. 학·연·산 협동과정

협약기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과	전 공	학위명	학과	전 공	학위명
부산발전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	국제법무학과	국제관계·국제금융, 재난안전정책	법학석사	국제법무학과	국제관계·국제금융, 재난안전정책	법학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신소재물리학과	신소재물리학	이학석사	신소재물리학과	신소재물리학	이학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융합과학기술학과	융합과학기술	공학석사 (융합과학기술)	융합과학기술학과	융합과학기술	공학박사 (융합과학기술)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산센터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공학석사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공학박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속공학과	금속공학	공학석사	금속공학과	금속공학	공학박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소방안전본부 (㈜태평양해양산업)	기업재난관리학과	안전융합콘텐츠, 빅데이터정보안전정책	재난관리학석사	기업재난관리학과	안전융합콘텐츠, 빅데이터정보안전정책	재난관리학박사
농촌진흥청	응용생명과학과	응용생명과학	이학석사	응용생명과학과	응용생명과학	이학박사

다. 학과간협동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전공	학위명	학 과	전공	학위명
음악문화학과	음악문화학, 실용음악, 음악재활	음악학석사	음악문화학과	음악문화학, 실용음악, 음악재활	철학박사
-	-	-	항만물류시스템학과	항만물류시스템	공학박사
-	-	-	예술학과	예술학	예술학박사
생명의료윤리학과	생명의료윤리학	철학석사	생명의료윤리학과	생명의료윤리학	철학박사
영유아학과	영유아교육학	영유아교육학석사	영유아학과	영유아교육학	영유아교육학박사
기업정책학과	정책학	정책학석사	기업정책학과	정책학	정책학박사
-	-	-	의료상담심리학과	의료행정학 상담심리치료학	의료상담심리학박사 (의료행정학) 의료상담심리학박사 (상담심리치료학)

라. 계약학과(정원외)

계 열	석사학위과정			
	학 과	전 공	학위명	정원
공학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스마트팩토리, 기계-조선융합시스템, 생산시스템	공학석사	20명

2. 전문대학원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과	전공	학위명	정원	학과	전공	학위명	정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글로벌통상금융전공	국제학 석사 (글로벌통상금융)	30명	국제학과	글로벌통상금융전공	국제학 박사 (글로벌통상금융)	20명
		글로벌한국학전공	국제학 석사 (글로벌한국학)			글로벌한국학전공	국제학 박사 (글로벌한국학)	
		글로벌다문화전공	국제학 석사 (글로벌다문화)			글로벌다문화전공	국제학 박사 (글로벌다문화)	
		공공정책전공	국제학 석사			공공정책전공	국제학 박사	
법학전문대학원	-	-	법학전문석사	80명	-	-	법학전문박사	10명

3.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정원
	학과	전공	학위명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70명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교육심리및상담전공 유아교육전공 다문화교육전공 독서교육전공 교육방법및교육공학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디자인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기계교육전공	교육학석사	169명
산업정보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환경관리학과 건축공학과 금속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조경학과 항만물류시스템학과 건설사업관리학과 그린에너지시스템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0명
사회복지대학원	보건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행정학전공 상담심리치료학전공 보건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석사 상담심리치료학석사 보건행정학석사	50명
법무대학원		경찰법학전공 부동산법학전공	법학석사(경찰법학) 법학석사(부동산법학)	20명
문화예술대학원	아동미술학과 문화예술매니지먼트학과 실용음악학과 생활문화예술학과		예술학석사	0명

[별표 2]

대학원 학위종별 후드 색상

대 학 원	석·박사학위명	색 상
일반대학원	철 학	진감색(Dark Blue)
	문 학	흰색(White)
	교 육 학	하늘색(Light Blue)
	법 학	진자주색(Purple)
	정 치 학	남색(Peacock Blue)
	행 정 학	남색(Peacock Blue)
	언 론 학	남색(Peacock Blue)
	경 제 학	진밤색(Copper)
	사 회 학	진홍색(Crimson)
	사회복지학	남색(Peacock Blue)
	경 영 학	담갈색(Drab)
	관광경영학	보라색(Violet)
	이 학	노랑색(Golden Yellow)
	체 육 학	황록색(Sage Green)
	공 학	오렌지색(Orange)
	가 정 학	밤색(Mareen)
	의 학	진녹색(Green)
	간 호 학	살구색(Apricot)
	음 악 학	분홍색(Red Purple)
	미 술 학	황토색(Yellow Darth)
	디 자 인 학	은색(Silver)
	예 술 학	진감색(Dark Blue)
	보 육 학	하늘색(Light Blue)
	아동가족학	황록색(Sage Green)
	영유아교육학	하늘색(Light Blue)
	정책학	남색(Peacock Blue)
의료상담심리학	노랑색(Citron)	
재난관리학	남색(Peacock Blue)	
국제전문대학원	국 제 학	보라색(Violet)
경영대학원	경 영 학	담갈색(Drab)
교육대학원	교 육 학	하늘색(Light Blue)
산업정보대학원	공 학	오렌지색(Orange)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남색(Peacock Blue)
	상담심리치료학	
	보건행정학	
법무대학원	법 학	진자주색(Purple)
문화예술대학원	예 술 학	진감색(Dark Blue)

* 후드 내부의 바탕색상은 교색(남색)으로 하고 후드 하단 27cm위에 13.5cm폭의 백색천을 붙인다.

* 박사학위복은 소매(폭 2인치, 3선)와 앞단(폭 4인치)에 검은 색 비로드를 붙인다.

* 학위모 수술색상은 석사모는 흑색, 박사모는 황금색으로 한다.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기 (1)

박(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과 및 전공:

논문: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위의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박사(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 ○ ○(인)

본 대학교 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학박사(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학위번호 :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기 (2)

박(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

논문: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위의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박사(석사)(○○○ 전공)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 ○ ○(인)

본 대학교 (○○)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학박사(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학위번호 :

대학원 석사 학위기 (3)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학석사(○○○ 전공)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 ○ ○(인)

본 대학교 (○○)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 학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학위번호 :

대학원 명예박사 학위기 (1)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는 하여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발전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명예 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 ○ ○(인)

본 대학교 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명예 학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학위번호 :

대학원 명예박사 학위기 (2)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는 하여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냈으므로
명예 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
에서 의결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 ○ ○(인)

본 대학교 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명예 학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학위번호 :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과정 수료증

수 박(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년 월 일생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 (○○) 학과 (○○ 전공)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 ○ ○(인)

본 대학교 (○○)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본 증을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별지 제7호 서식]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 연구과정 이수증

이 박(석) 제 호

이 수 증

성 명

년 월 일생

연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 (○○) 학과 (○○ 전공)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연구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대학원장 (○○○학박사) ○ ○ ○(인)

본 대학교 (○○)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본 증을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